

제38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록 (서면회의)

1. 회의일시 : 2012. 7. 10.(화)

2. 장 소 : 방송통신위원회

3. 참석위원 : 이계철 위 원 장

홍성규 부위원장

김충식 상임위원

신용섭 상임위원

양문석 상임위원 (5인)

4. 불참위원 : 없음

5. 회의내용

㉠ 서면회의 사유

- 「방송통신위원회 회의운영에 관한 규칙」 제14조(서면결의)제1항제1호에 따른 제2009-30차 전원회의('09.7.9), 제2011-17차 전원회의('11.3.21) 에서 의결한 '토론을 요하지 아니하는 일상적·반복적 안건 또는 경미한 안건'에 해당됨

② 의결사항

가. 방송채널사용사업 변경등록에 관한 건 - (주)씨유미디어 등 5개사의 “코미디TV” 등 7개 채널 - (2012-38(서)-140)

- 「방송법」 제15조(변경허가등)제1항에 의거, (주)씨유미디어 등 5개사의 방송채널사용사업 변경등록 신청 건에 대해 원안대로 변경등록하기로 의결함

○ 주요 내용

< 변경등록 내용 >

신청법인	채널명	방송유형	변경사항	변경 전	변경 후
(주)씨유미디어	코미디TV (ComedyTV)	TV	방송분야	코미디 및 보조적 데이터 방송	코미디 및 보조적 데이터 방송 (TV전자상거래 포함)
	와이스타 (Y-STAR)	TV		영화연예정보 및 보조적 데이터 방송	영화연예정보 및 보조적 데이터 방송 (TV전자상거래 포함)
씨제이이앤엠(주)	엑스티엠 (XTM)	TV	방송분야	버라이어티쇼 및 보조적 데이터 방송	버라이어티쇼 및 보조적 데이터 방송 (TV전자상거래 포함)
	올리브네트워크 (O'live Network)	TV		식문화, 생활정보 및 보조적 데이터방송	식문화, 생활정보 및 보조적 데이터방송 (TV전자상거래 포함)
(주)온게임 네트워크	ongamenet	TV	방송분야	게임 및 보조적 데이터방송	게임 및 보조적 데이터방송 (TV전자상거래 포함)
(주)바둑텔레비전	바둑TV	TV	방송분야	바둑 및 보조적 데이터방송	바둑 및 보조적 데이터방송 (TV전자상거래 포함)
(주)푸드티비	푸드티비 (Food TV)	TV	방송분야	식생활문화 및 보조적 데이터방송	식생활문화 및 보조적 데이터방송 (TV전자상거래 포함)

나. 「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」 일부개정안에 관한 건 - (2012-38(서)-141)

- 방송법 개정의 후속조치로 국내제작 애니메이션 신규편성 인정범위 및 의무비율 등을 구체화하기 위한 고시 일부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함

○ 주요 내용

① 국내제작 애니메이션 신규편성 인정범위(안 제4조제1항)

- PP의 경우 국내최초 작품을 신규편성으로 규정할 경우 가격 양등 등 시장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을 고려하여 플랫폼 즉, 지상파·종합유선·위성 등에서 최초 방영한 작품을 신규로 인정

② 신규편성의무 적용기준 및 비율(안 제4조제4항 및 제5항)

- (적용기준) 시청률은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이고 차등의 요소를 감안하기 어려워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되, 방송과 관련있는 방송매출액 기준 적용

- (적용비율)

- (1) 중편PP : 개국 후 3개월 자료 및 올림픽 개최 등 경영변수 등을 고려, 최소 500억원의 방송매출액을 기준으로 차등 적용

현 행	개정안				
<신 설>	구분	700억원 이상	700 ~ 600억원	600 ~ 500억원	500억원 미만
	비율(%)	1	0.7	0.5	0.3

- (2) 전문PP : 수급 물량 등 시장현실을 고려 방송매출액에 따라 50억원 단위로 5단계로 나누어 차등 적용

현 행	개정안					
<신 설>	구분	200억원 이상	150 ~ 200억원	100 ~ 150억원	50 ~ 100억원	50억원 미만
	비율(%)	1	0.8	0.6	0.3	제외

③ 주시청시간대 편성시 가중치 부여(안 제11조제2항)

- 기존 가중치 부여 사례 등을 고려, 국내제작 애니메이션의 주시청시간대 편성시 150% 가중치 적용

○ 향후일정

- 관보 게재 및 시행 : '12. 7. 18.

다. 「지역방송발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」 일부개정안에 관한 건

- (2012-38(서)-142)

- 지역방송발전위원회의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해 서면회의 근거 마련, 의사정족수 변경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규칙 일부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함

○ 주요내용

① 의사정족수 변경(안 제6조제4항)

-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(위원 5인 중 4인 참석 필요) 출석에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변경

② 서면회의 근거 마련(안 제6조제6항)

- 경미한 안전, 직접 회의 개최가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회의를 할 수 있도록 하되, 위원이 서면회의에 반대의사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제외

○ 향후 일정

- 관보 게재 및 시행 : '12. 7월중